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서울특별시제2화장장 (추모공원)입지선정 반대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 |
|----------|---|
| 의안 번호 | 7 |
|----------|---|

발의년월일 : 2002. 7. 15
발 의 자 : 운영 위원 장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에서는 2001. 3. 17 제10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화장장입지선정 반대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반대 및 철회활동을 전개 하였으며
- 2002년 6월 30일 지방의회의원의 제3대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특별위원회가 자동 해체되어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 건립 입지선정 철회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제4대 서초구의회 에서는 서초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책무가 있으므로 특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청계산내의 서울특별시 제2화장장(추모공원) 입지선정을 반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제2화장장(추모공원) 입지위치와 교통, 환경실태에 대한 조사확인
- 나. 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건립에 대해 서울시에 전면 재검토 촉구
- 다. 청계산지킴이 시민운동 본부 및 서초구와 연대 추진
- 라. 관련기관 방문 서초구의회 의견 전달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50조(위원회의 설치)
 - 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및 제9조
- 나. 기타 : 없음

4. 구성결의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제 호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 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초구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서초구민에게 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 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책무가 있으므로, 현재 서울특별시가 서초구의 청계산에 제2화장장 입지를 선정한 것은 교통 및 주변환경, 주민의사동에 대한 사전조사 및 절차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까지도 훼손한 행위로 구민의 대표기관인 서초구 의회에서는 2001년 3월 15일 제2화장장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여 왔으나 서초구의회 제3대 임기가 만료되고 서초구의회 제4대 임기가 개시됨에 따라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반대 운동 및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초구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 결의한다.

1. **특별위원회명**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
2. **특별위원회구성** : 18명 이내
(※위원선임은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의함)
3. **부의인건 및 활동범위**
 - 부의안건 :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서울특별시제2화장장(추모공원)입지선정반대추진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활동범위
 - 가. 제2화장장(추모공원) 입지위치와 교통, 환경실태에 대한 조사확인
 - 가. 서울시제2화장장(추모공원)건립에 대해 서울시에 전면 재검토 촉구

- 나. 청계산지킴이 시민운동 본부 및 서초구와 연대 추진
- 다. 관련기관 방문 서초구 의회 의견 전달

4. 존속기간

-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청계산내 제2화장장(추모공원) 입지선정의 철회시 까지

5. 활동방법

- 제2화장장(추모공원) 입지위치와 교통, 환경실태에 대한 조사확인
- 관계관의 출석 질의답변
- 필요시 공청회 개최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 관련기관 방문 등 반대활동 전개